

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개정내용

도시가스 시공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중 일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.

아울러 일일시공감리시 시험·측정 등에 의한 PE 용착성적서 등의 결과물은 감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구하도록 개정되었다.

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(안) 신·구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제2-1조[용어의 정의] (생략) 1. (생략) 2. “상주시공감리”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과 사용자공급관의 시공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과정의 일체를 확인·감리하는 것을 말한다. 3~8. (생략) 9. “확인”이라 함은 시공을 기술검토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·조정·승인·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 10, 11. (생략)</p>	<p>제2-1조[용어의 정의] (변경 없음) 1. (변경 없음) 2. “상주시공감리”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과 사용자공급관의 시공시 <u>제3-3조 제1호의 내용</u>을 확인·감리하는 것을 말한다. 3~8. (변경 없음) 9. “확인”이라 함은 시공을 <u>도시가스사업법 및 기술검토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·측정·시험</u>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 10, 11. (변경 없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주시공감리의 용어를 고시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함. ○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.
<p>제2-7조[시공기록의 보존·제출] ① (생략) 1~5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2-7조[시공기록의 보존·제출 등] ① (변경 없음) 1~5. (변경 없음) ② (변경 없음) ③ <u>일일시공감리시 시험·측정 등에 의한 PE용착성적서 등의 결과물은 감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총 감리 길이가 50m(사용자공급관의 경우 200m) 미만인 도시가스배관의 시공시에는 최종 시공기록에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결과물 등의 제출시기에 여유를 주어 시공자의 편의를 도모함.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3-2조【시공감리의 종류별 대상범위】 시공감리의 종류별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.	제3-2조【시공감리의 종류별 대상범위】 시공감리의 종류별 대상범위는 <u>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로 한다. 이 때 터파기, 도로포장 등의 부대공사는 감리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	○ 터파기, 도로포장 등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와 무관한 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화함.
제3-3조【시공감리방법】 (생략) 1. 상주시공감리 가. 감리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 이외의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실정을 감안 통합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. 나. (생략) 2. 일반시공감리 (생략)	제3-3조【시공감리방법】 (변경 없음) 1. 상주시공감리 가. 감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공과정 또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·감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실정을 감안 통합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. (1) 공사관계자의 적정 여부 (2) 각 공정별 시공기록의 적정 여부 (3) 배관 재료의 적정여부 (4) 배관의 매설깊이의 적정여부 (5) 배관·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의 적정여부 (6) 배관 접합의 적정여부 (7)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(8)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나. 감리원은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후 당일 퇴메우기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확인 가능한 경우 모래부설·다짐·보호포(판) 설치 등의 적정여부는 다음번 시공감리시 확인할 수 있다. 다. (변경 없음) 2. 일반시공감리 (변경 없음)	○ 상주시공감리시 공사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사의 지연 및 민원을 방지하고 고객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함. ○ 당일 퇴메우기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확인 가능한 경우의 감리방법 신설 ○ 항목 변경

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개정(안) 신·구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2-1-4조【기술검토처리 일반사항】 4.가 기술검토는 관련법규, 관련고시, 관련지침 및 기타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	제2-1-4조【기술검토처리 일반사항】 4.가 기술검토는 관련법규, 관련고시, 관련지침 및 기타 행정관청이 <u>가스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고시·조례·규칙 등과, 허가관청에서 기술검토시 적용토록 요구하는 허가조건은 이를 추가로 적용한다</u>	○ 행정관청에서 규정한 고시·지침·조례의 대부분은 지역특성에 따른 행정규제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공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